



1. 개정세법요약과 초과납부세액 처리 방법

1. 개정세법 요약

1998		1999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 47①)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급여액 500만원 초과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공제한도액:900만원		※ 공제한도액:1,200만원	
○ 교육비공제(소득세법 § 52① 제4호) - 공제대상 교육비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유치원과 영유아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교육비 등 - 공제한도 유치원 또는 영유아:1인당 연간 70만원 대 학생 :1인당 연간 230만원		⇒ 유치원아 또는 영유아:유아학원의 수강료 추가 ⇒ 유치원 또는 영유아:1인당 연간 100만원 ⇒ 대 학생 :1인당 연간 300만원	
○ 보험료공제(소득세법 § 52① 제2호) - 공제한도:연간 50만원		⇒ 연간 70만원	
○ 의료비공제(소득세법 § 52① 제3호) - 공제한도: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 연간 200만원	
○ 차입금상환액공제(소득세법 § 52① 제5호) - 공제한도:연간 72만원		⇒ 연간 180만원	
<신 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 126외2) - 공제대상금액:신용카드사용금액중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총급여액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임 - 한 도 액 : 연 간 300만원 ○ 다만, '99년도에는 - '99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중 동기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100만원을 한도)	

* '99년 9월 시행
근로소득세



글/임현석 세무사

2. 초과납부세액 처리 방법 등

(1) 어떤 식으로 세부담 경감혜택을 조속히 반영하는지?

- 종전의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금년 1월~8월 중에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 동 기간에 대하여 개정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재계산한 세액을 차감

하여 초과징수금액을 계산하고

- 그 초과징수금액은 9월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차감함.

※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세액의 조정방법과 동일

(예) 2월급여 200만원(부양가족 3명)인 경우 약 12만원(△15,230×8개월)을 9월 이후 원천징수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면 됨.

(2) 세법 개정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 이번 세 부담 경감조치의 적용방법?

○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 경감조치 이전에 퇴직한 자의 경우에는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세법 개정에 따른 경감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2000년 5월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 다만, 세법 개정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연말정산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3) 1월부터 8월간 초과징수금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 초과징수금액은 1월~8월중 급여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에서 동 기간중 매월의 급여에 개정되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여 것이 원칙이나

○ 다음의 간편한 방법으로도 초과징수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초과징수금액 = 기징수세액합계 - (월평균급여에 대한 간이세액×근속월수)

※ 월평균급여

$$= \frac{(1월\sim 8월간\ 급여합계)}{근속월수}$$

(4) 4인가족인 김성실씨의 매월 급여가 100만원 씩이고 3, 6월에 100%씩 상여를 받을 경우 초과징수금액의 계산 사례

□ 1월부터 8월까지의 초과징수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 현행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87,960원)에서
- 개정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51,960원)을
- 차감하여 계산(36,000원)

월별	월급여 (만원)	상여 (만원)	간이세액표 (만원)	간 이 세 액(원)		
				현행	개정안	초과징수
1월	100		100	1,470	0	△1,470
2월	100		100	1,470	0	△1,470
3월	100	100	①133	②39,570	③25,980	△13,590
4월	100		100	1,470	0	△1,470
5월	100		100	1,470	0	△1,470
6월	100	100	133	39,570	25,980	△13,590
7월	100		100	1,470	0	△1,470
8월	100		100	1,470	0	△1,470
초과징수금액의 계산				87,960	51,960	△36,000

- ※ 1. ① 상여 100만원을 지급대상기간인 3개월로 나누어 적용
- 2. ② ③ :133만원 해당세액×3월-기원천징수세액
- ②14,170원×3월-(1,470+1,470)= 39,570원
- ③8,660원×3월-(0)= 25,980원

□ 다만,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기징수세액합계-월평균급여[(1월~8월)/근속월수]에 대한 간이세액×근속월수
⇒87,960원(기징수세액)-37,600원(=4,700원^{주1}×8월)=50,360원

※ 주1) 125만원(1,000만원/8개월)에 대한 간이세액:4,700원

(5) 4인가족인 김공평씨의 매월 급여가 150만원 씩이고 3, 6월에 100%씩 상여를 받은 경우 초과징수금액의 계산사례

- 1월부터 8월까지의 초과징수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 현행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86,320원)에서
 - 개정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317,240원)을
 - 차감하여 계산(69,080원)

월별	월급여 (만원)	상여 (만원)	간이세액적용과표(만원)	간 이 세 액(원)		
				현행	개정안	초과징수
1월	150		150	20,810	17,200	3,610
2월	150		150	20,810	17,200	3,610
3월	150	150	①200	②130,730	③107,020	23,710
4월	150		150	20,810	17,200	3,610
5월	150		150	20,810	17,200	3,610
6월	150	150	200	130,730	107,020	23,710
7월	150		150	20,810	17,200	3,610
8월	150		150	20,810	17,200	3,610
초과징수금액의 계산				386,320	317,240	69,080

- * 1. ① 상여 150만원을 지급대상기간인 3개월로 나누어 적용
- 2. ② ③ :200만원 해당세액×3월-기원천징수세액
 - ② 57,450원×3월-(20,810원+20,810원)=130,730원
 - ③ 47,140원×3월-(17,200원+17,200원)=107,020원

- 다만,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기징수세액합계-월평균급여[(1월~8월간 급여합계)/근속월수]에 대한 간이세액×근속월수
 - ⇒386,320원(기징수세액)-311,600원(=38,950원^{주1)}×8월)=74,720원
 - * 주1) 1,875천원(=1,500만원/8개월)에 대한 간이세액 :38,950원

(6) 4인가족인 김친절씨의 매월 급여가 200만원 씩이고 3,6월 100%씩 상여를 받은 경우 초과징수금액의 계산사례

- 1월부터 8월까지의 초과징수금액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 현행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1,152,900원)에서
- 개정안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922,460원)을
- 차감하여 계산(230,440원)

월별	월급여 (만원)	상여 (만원)	간이세액적용과표(만원)	간 이 세 액(원)		
				현행	개정안	초과징수
1월	200		200	57,450	47,140	10,310
2월	200		200	57,450	47,140	10,310
3월	200	200	①266	②404,100	③319,810	84,290
4월	200		200	57,450	47,140	10,310
5월	200		200	57,450	47,140	10,310
6월	200	200	266	404,100	319,810	84,290
7월	200		200	57,450	47,140	10,310
8월	200		200	57,450	47,140	10,310
초과징수금액의 계산				1,152,900	922,460	230,440

- * 1. ① 상여 200만원을 지급대상기간인 3개월로 나누어 적용
- 2. ② ③ :266만원 해당세액×3월-기원천징수세액
 - ② 173,000원×3월-(57,450원+57,450원)=404,100원
 - ③ 138,030원×3월-(47,140원+47,140원)=319,810원

- 다만, 매월분 급여에 대하여 세액을 재계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함
 - 기징수세액합계-월평균급여[(1월~8월간 급여합계)/근속월수]에 대한 간이세액×근속월수
 - ⇒1,152,900원(기징수세액)-873,840원(=109,230원^{주1)}×8월)=279,060원
 - * 주1) 250만원(=2,000만원/8개월)에 대한 간이세액 :109,230원